

부**령****●고용노동부령 제290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체당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호”를 “법 제7조제1항제4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정본”을 각각 “정본 또는 사본”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체당금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로 한다.

제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신청서”를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통지서”를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로 한다.

제8조의9제1항 중 “융자신청서”를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로 한다.

제8조의10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11제1항 중 “신청”을 “융자 신청”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채불 사업주”를 각각 “채불사업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을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추가징수의”를 “추가 징수의”로, “추가징수 통지서”를 “추가 징수 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추가징수액”을 “추가 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추가징수”를 “추가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추가징수 요구”를 “추가 징수 요구”로, “채당금·융자금 연대 환수·추가징수 통지서”를 “채당금 또는 융자금 연대 환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확인”의”를 “일반채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채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징수 업무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채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채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당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채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채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비고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중 “해당합니다”를 “해당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이 신청서는”을 “이 신고서(신청서)는”으로, “신고인”을 “신고인(신청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의 분할 상환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10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융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반채당금 지급청구서

[체당금(替當金)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접수번호	②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③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청구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⑦체당금(*)		⑧체당금 구분(*)	
	원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입금의뢰	⑨입금은행			
	⑩예금주			
	⑪계좌번호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⑫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⑬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⑭확인통지서 대장번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선람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장(지사장)
	조회확인						
	입력확인						
공지사항							

1. 이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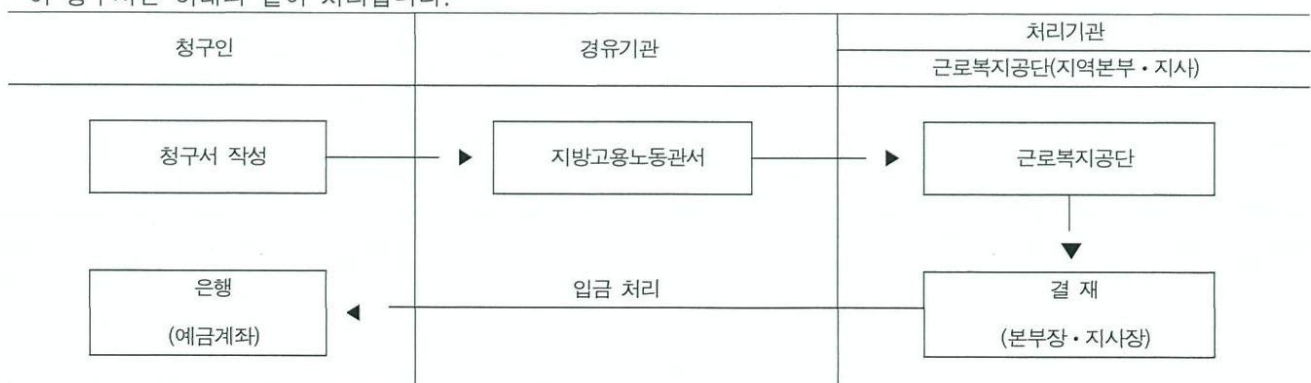
작성 방법

굵은 선 안의 별표(*)는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⑨~⑪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체당금을 지급받기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와 함께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근무기간 및 퇴직일 년 월 일 ~ 년 월 일	①채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	
②소(訴)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③판결등이 있는 날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원
청구인 ⑤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채당금 지급청구일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사업주 지급금, 퇴직연금, 이행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등의 금액) 원 가. 지급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습니까? []에 []아니오 나. 지급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이행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습니까? []에 []아니오		
⑥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원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원		
⑦지급받아야 할 채당금 원		
⑧입금의뢰	입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⑨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⑩ 첨부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채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본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인은 귀 기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제1항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 법률구조공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소액채당금 지급 등의 처리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공지사항

1. 이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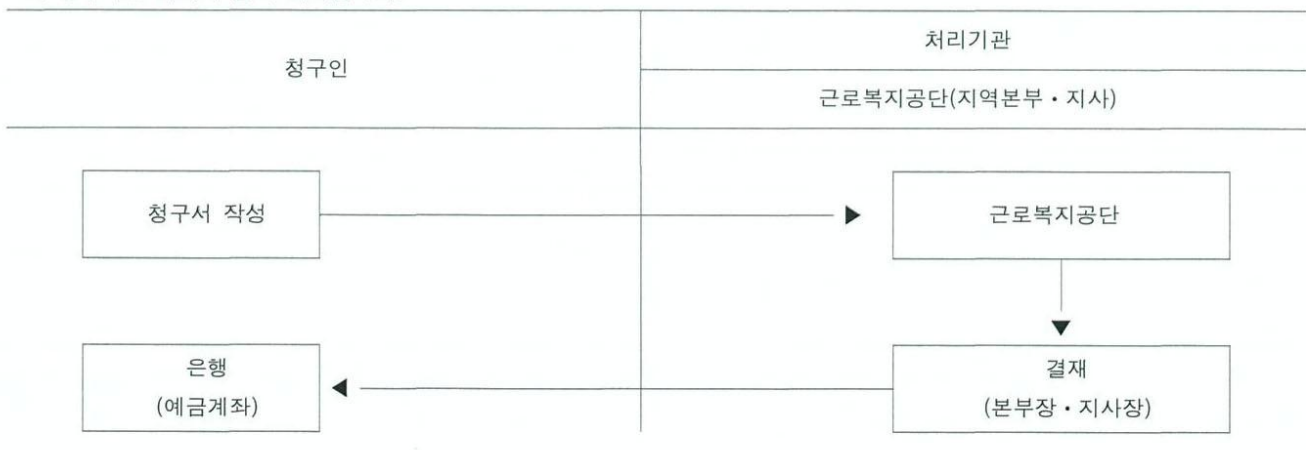
작성방법

- 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번호를 말합니다.
- ② "소(訴) 제기일 또는 신청 등을 한 날"은 체불 임금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장을 제출하거나 신청 등을 한 날을 말합니다.
- ③ "판결등이 있는 날"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구판결,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및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날을 말합니다.
- ④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은 법원에서 판결등을 통하여 인정되어 확정된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
- ⑤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법원에서 확정된 체불 임금등 중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등이나 퇴직연금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⑥란의 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임금 중 퇴직일부터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⑥란의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부터 최종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말합니다.
- ⑦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은 ⑥란의 "가" 와 "나"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합계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시한 그 금액의 상한이 지급받게 될 체당금의 금액이 됩니다.
- ⑧ "입금의뢰"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⑨ "대상사업주"란에는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입사일	년 월 일	임금 지급일	매월 일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상시근로자수
	소재지	

확인 신청 사항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실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인은 귀 기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 연금사업자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체당금 등의 확인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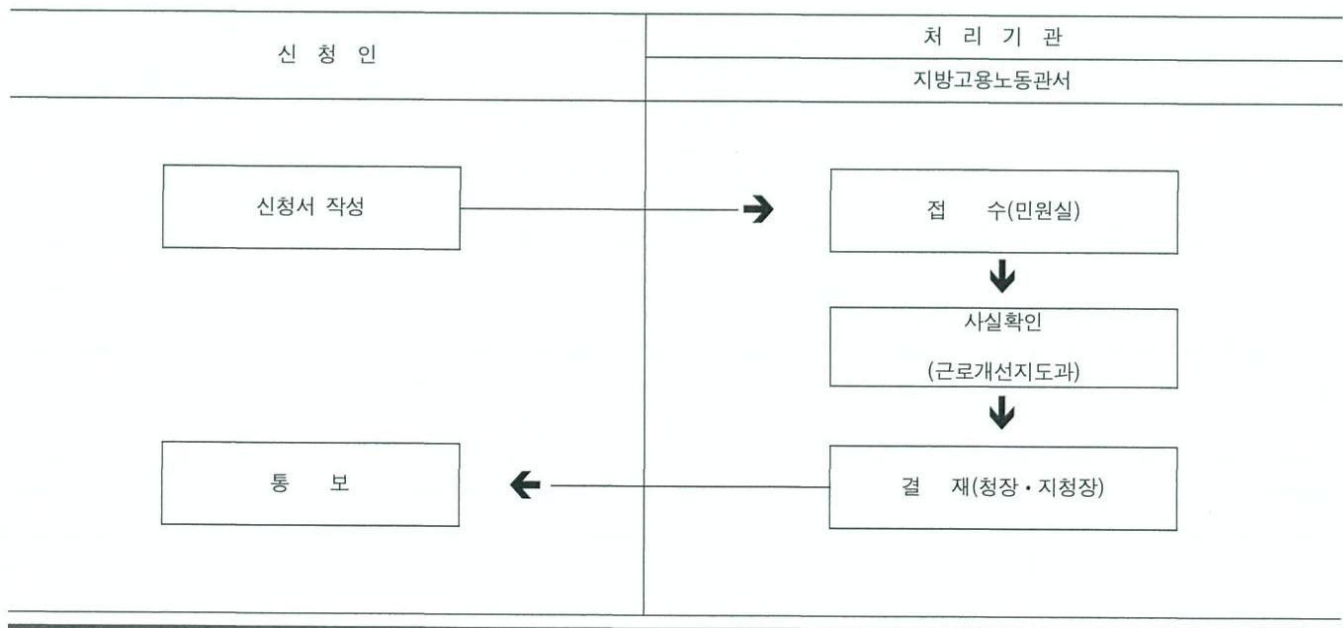
인)

작성방법

1. 입사일란에는 대상사업장에 신청인이 입사했던 날을 적고, 임금지급일란은 대상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의 임금지급일을 적으며, 대상사업주란은 신청인이 퇴사할 당시의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속 사업장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_____만원) [] 10명 이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업종이나 지역에 속하는 사업장인 경우) [] 30명 미만 (월평균보수: _____만원) [] 30명 이상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작성방법

소속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란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적습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합니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계산식에 따릅니다).

※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기준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산정한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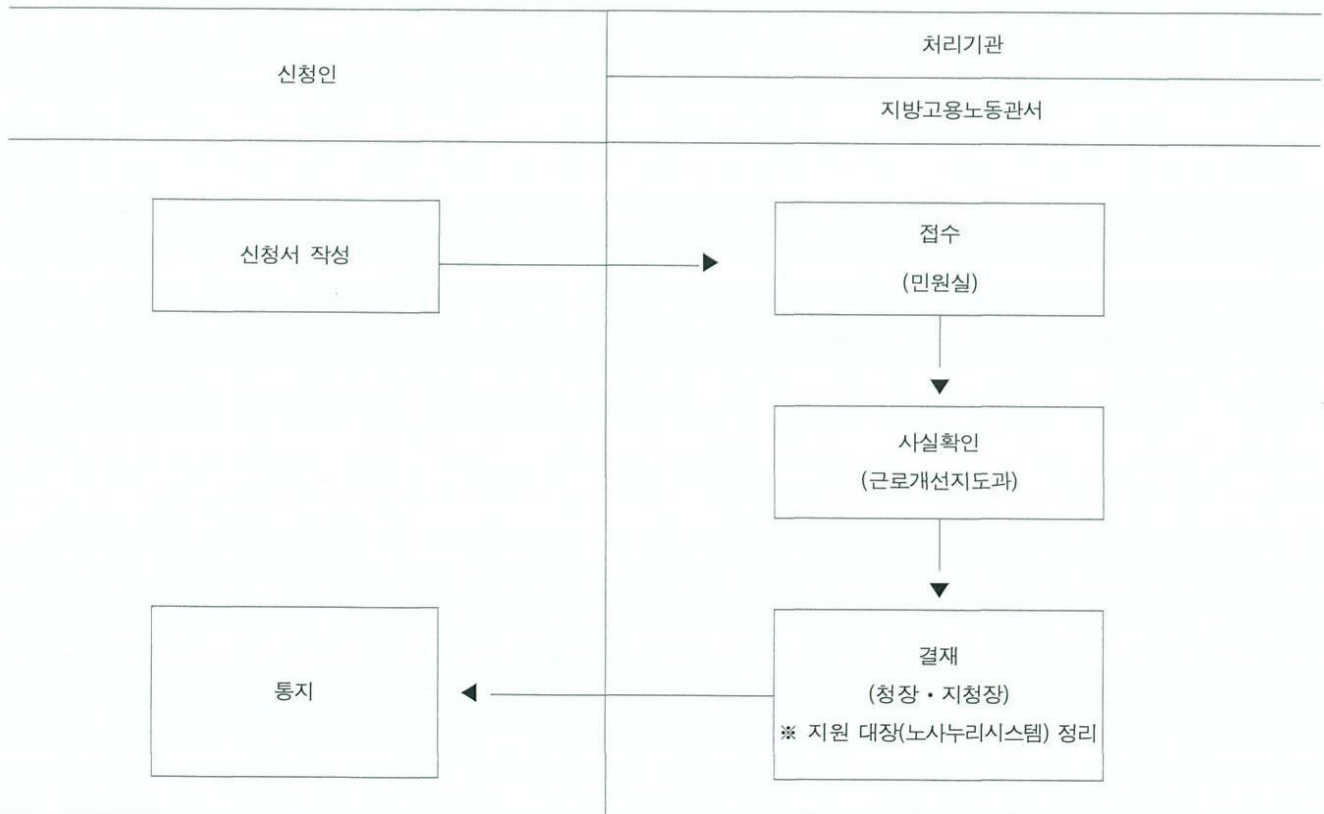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 이후 대리권자의 확인 시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조사과정에서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외의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대상자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이면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4.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체당금 관련업무는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작성 및 제출, 체당금 청구서 작성 및 사실확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용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업종(주산품)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확인 신청 사항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사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장인 사실 4.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입사일 및 퇴직일(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여부) 5.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체불금품 총액
---------------------	--

3.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및 체불금액: 다수일 경우 별지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재직기간	체불금액(천원)			
					계	임금	퇴직금	기타
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frac{1}{2}$
 $\frac{1}{3}$
 $\frac{1}{4}$

신청인(사업장대표)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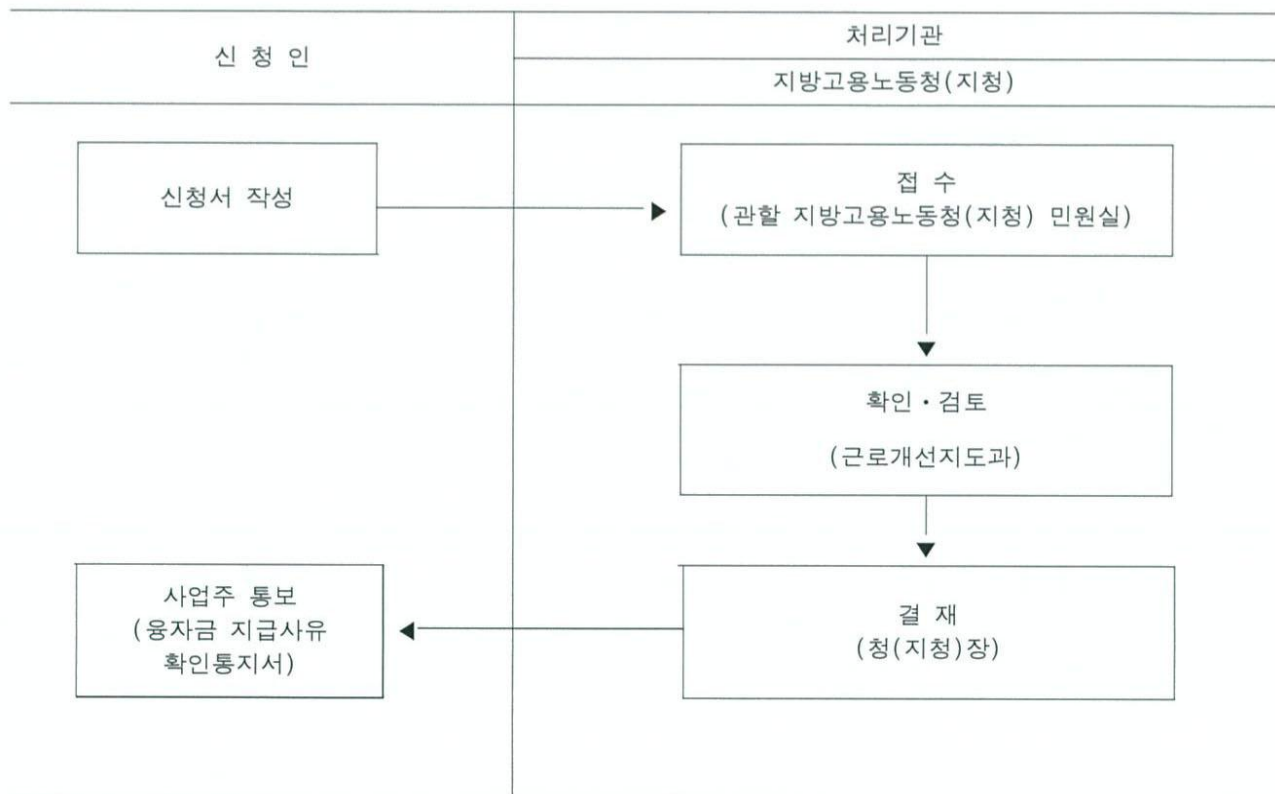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첨부 서류 준비 안내

1. 재고량 증가, 매출액·생산량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사업개시일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된 날(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3.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근로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4.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등 체불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입니다.
5.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근로계약서, 4대보험 피보험자격관련 서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서식]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금액	

②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법인인 경우 실제 대표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명의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③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 (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신청	④신청내용
	⑤사용용도
	신청부수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및 체불사업주의 확인을 신청하오니,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①"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등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적습니다. 다만, 대상 사업주가 동일하여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그 밖의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서식에 따라 해당 인적사항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적어 제출합니다.

②"대상 사업주"란에는 대상 사업주의 사업장명 및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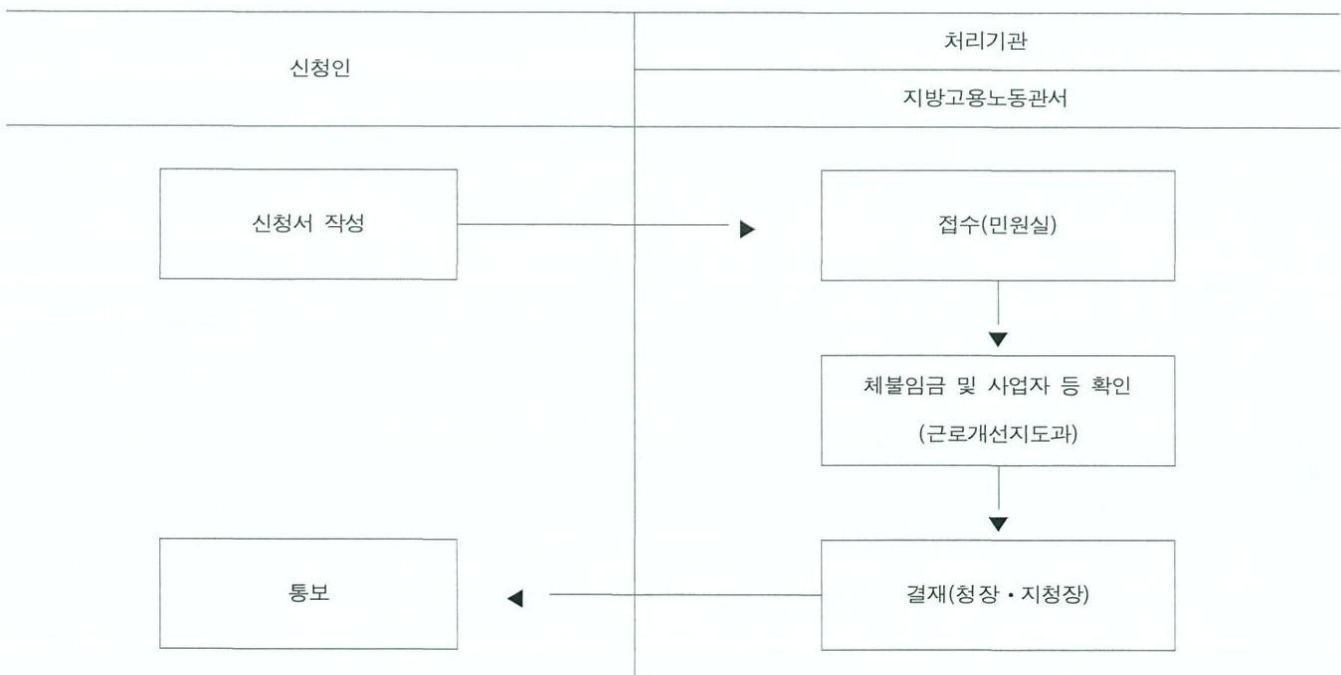
③"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었던 경우에만 작성하고, "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해당 사업주(무면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합니다.

④"신청내용"란에는 "○○○○년 ○월 ○일 소(訴)를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고소)사건과 관련된 체불임금 및 체불사업주 내역"으로 적습니다.

⑤"사용용도"란에는 "법률구조용"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3서식]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앞쪽)

발급번호							
①체불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위				근무기간		
	임금산정기간				정기임금지급일		
②체불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명의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명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대표자					
		명의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③적법한 직상 건설 사업자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명의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대표자					
		명의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④체불 임금등 내역 (원)	총 금액	원					
	최우선 변제금	구분	계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계					
		최종 1개월(1년)분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최종 2개월(2년)분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최종 3개월(3년)분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⑤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원)

구분	합계	임금	퇴직금	상여금	휴업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그 밖의 금품
계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확인근거

사용용도
(신청
부수)

확인자

근로감독관 ○○○

(전화번호:)

첨부
서류1.
2.

참고

①수사 중 ②취하종결
③기소송치 ④불기소송치
⑤기소중지 송치

귀하의 체불 임금등 및 체불사업주에 관한 증명 신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발급합니다.

20

○○지 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비고

1.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첨부합니다.
2. ④체불 임금등 내역란의 최종 1개월(1년)분, 최종 2개월(2년)분, 최종 3개월(3년)분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개월(1년)씩 소급한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등의 내역을 적습니다.
3. ⑤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란은 근무한 기간을 월별로 구분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2015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15년 5월<2015년 5월 1일~5월 16일>, 2015년 4월<2015년 4월 1일~4월 30일>, 2015년 3월<2015년 3월 1일~3월 31일>, 2015년 2월<2015년 2월 1일~2월 28일>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해당 기간의 체불 임금 등의 내역을 적습니다.
4. 대상 사업주가 동일하여 여러 명이 함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①체불근로자, ④체불 임금등 내역, ⑤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란에는 대표 신청인에 대한 내역을 적고, 그 밖의 신청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서식에 따라 해당 인적사항과 체불 임금등 내역 등을 작성합니다.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체당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
☐ **용자금**

환수 및 추가 징수 대상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 ☐ 체당금 ☐ 용자금	지급액	원		
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또는 잘못 지급된 금액		원		
⑥환수 명령액		원		
⑦추가 징수액		원		
⑧납부할 금액(⑥+⑦)		원		
⑨환수 및 추가 징수 결정 사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귀하에게 지급한 체당금 또는 용자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통지하오니 불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체당금 연대 [] 환수 통지서
[]융자금 [] 추가 징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채당금 용자금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대 환수 · 추가 징수 대상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	
	주소 (소재지)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	
	주소 (소재지)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	
	주소 (소재지)			

①환수 금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상당액 (원)
②추가 징수 금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상당액 (원)
납부해야 할 금액(①+②)	원
환수 및 추가 징수 이유	
납부방법	붙임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위의 []체당금 []용자금 수령자에게 지급한 체당금 또는 용자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통지하오니 불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
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근로자가 소액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 판결문 또는 판결의 확정증명원 등의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사본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은 경우 1년 거치 후 2년 간 분할 상환하던 것을,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환경부령 제879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인증 신청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별 사진